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체 육 진 흥 과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21명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근한·강승수·김민성·김영길
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
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
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
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 (22명)

1. 제안이유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6조의2, 제33조의2, 제34조
- 2)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 제2조, 제6조

나. 부서검토: 체육진흥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체육회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제9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모성권 보호를 위해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5. (생략)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아. (생략)

10.~12. (생략)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 ④ 지방체육회 중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략)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체육진흥과

조 례 명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6조의2, 제33조의2, 제34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 제2조, 제6조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2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3조~9조) □ 검토 결과 ○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추후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수반이 필요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량, 체육회직원 및 타 단체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로 생활체육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소요예산: 현재 예산에서 순증가 금액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 조례안 제5조에서 보수체계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 위 조례안 제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수행과 2항에 따른 사업위탁으로 세출발생(안 제6조)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의 위탁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예산재정과, 구미시체육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처우개선 사업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신민섭(☎054-480-5014)